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이주희 · 남인순 · 문진석
윤종군 · 김현 · 박지원
손솔 · 최혁진 · 정혜경
용혜인 · 이훈기 · 김선민
전종덕 · 장종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까지에”를 “제7항까지에”로, “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”를 “갱신,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데이터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”로 한다.

⑦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(이하 “데이터 서비스”라 한다)를 매월 일정한 규모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데이터 제공량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매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데이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7항의 개정규

정은 이 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</p> <p>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2조(이용자 보호) ① ~ ⑥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(이하 “데이터 서비스”라 한다)를 매월 일정한 규모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데이터 제공량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매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⑧ -----제7항까지에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갱신,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데</u></p>
<p><u>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</u>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·기준·절차, 평가 결과 활용,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, 보증보험의 가입·<u>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</u> 관하여</p>	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이터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---</u> 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	---